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05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조승래·박용갑·강준현

김용만 • 이정문 • 정준호

한준호 • 이해민 • 진선미

김영진 • 박홍배 • 김교흥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직접 송달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실 무적으로도 요구서는 전자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송달되고 있 는 점에서 현 제도가 디지털 시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서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서를 국회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송 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송달 하도록 하여 요구서 송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6항).

법률 제 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요구서"를 "요구서는 국회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송달하되, 그 밖에 요구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메일 등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의 <u>요구서</u> 의 송달에	⑥ <u>요구서는 국회가</u>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	구축・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
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템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
<후단 신설>	로 송달하되, 그 밖에 요구서-
	<u>이 경우 전자메일 등 전</u>
	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u>것으로 본다.</u>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